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8. 17.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 안전요지 : 따 로 붙 임
4. 검토의견 : 따 로 붙 임

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9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정 수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7년도 개장이후 중부권 최대의 농산물 유통기지로서 생산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산물 유통 핵심주체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시장개설 후 20여년이 경과, 시설낙후와 협소로 기능이 저하되어 유지보수비용의 증가, 악취발생, 교통체증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농림수산물식품부의 「'0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계획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 치 : 오정동 705번지 일원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내
- 시설규모 : 전체 연면적 33,000m²
 - 1단계 채소경매장 신축 : 지상3층 15,000m²
 - 2단계 청과경매장 신축 : 지하1층 지상2층, 6,000m²
 - 3단계 청과물동 재건축 : 지상2층 12,000m²
- 사업기간 : 2009 ~ 2013(5년간)
- 사 업 비 : 379억원(국비 114, 국고융자 151, 시비 114)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덕구 오정동 705번지 일원에 위치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시가 농림수산식품부의 「'09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계획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시장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내 시설현대화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379억원(국비 114억원, 국고융자 151억원, 시비 114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준공목표로 연면적 33,000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채소경매장 등을 신축할 예정임.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20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와 경매장 협소, 주차공간 부족과 쓰레기 과다 발생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기존의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채소경매장 등을 신축하여 쾌적하고 현대화된 도매시장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나,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시장은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9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결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